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117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8.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 해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원고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고 원고에게 대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고, 피고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1:25경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235 국립광주과학관 매표소 앞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를 만나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현금 2,2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같은 수법으로 원고로부터 현금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기’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877호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죄로 기소되어 2021. 5. 25.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21노1495호로 항소하여 2021. 8. 10.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8.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보이스피싱 직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 전속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기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4,8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C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고에게 위 돈을 직접 건네준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의 역할, 피고의 수익분배비율 및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3,367만 원(= 4,810만 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